

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		7 일	
건축물	위치								
	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(동), 부속 건축물 (동)				연면적 총 m ²				
	허가번호				공사 예정기간 (착공, 준공)		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		
관리자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		
	주소				(전화번호:)				
해체공사 시공자	성명				계약일자				
	회사명				계약금액 원				
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		건설업등록번호				
	주소				(전화번호:)				
	하수급인		성명(법인명)			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			
	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(해체작업자)		성명 자격증			자격번호			
해체공사 감리자	성명				자격번호				
	사무소명				신고번호				
	사무소 주소				(전화번호:)				
	계약일자				계약금액 원				
현장관리인	성명				전화번호				
	주소								
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[] 천장재(아스칼텍스, 아미텍스 등) [] 바닥재(아스타일 등) [] 해당 없음 [] 지붕재(슬레이트 등) [] 파이프보온재(석면포) [] 천장단열재(석면포) [] 그 밖의 사항								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신고인(관리자)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.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

주/부속 구분	동 명칭	층수 (지상, 지하)	높이(m)	건축면적(㎡)	연면적(㎡)	구조	특수구조 건축물 여부

※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3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,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모두 적습니다.

「건축물관리법」 근거규정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1항	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

유의사항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2조제9호	1.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2.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처리절차

